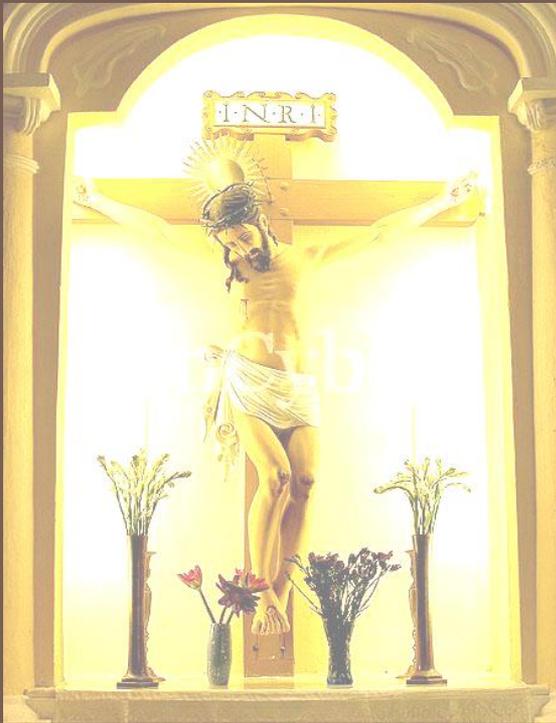


2013년 본당 사목협의회 연수



* 연수 내용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 세상 안에 사는 평신도

-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 이외의 모든 신자들을 말한다.
- 평신도들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그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찾도록 불린 사람들이다.
- 세속의 온갖 직무와 일, 가정과 사회의 일상적인 조건들 안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세계 성화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이다.
- 특별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이^들이다.
-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이어야 하는 것이다.

2. 평신도의 사명

- 평신도들은 교회의 발전과 세상의 성화를 위해 스스로의 힘을 다하도록 불린 이들, 즉 각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에페 4,7)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요 증인이다.
-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은 교회의 구원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3. 사도직에 불린 평신도

-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현대의 정세는 보다 활발하고 보다 광범위한 평신도의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교회 구성원 전체의 활동을 “사도직” 이라고 부른다.
- 신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사도직에 부르심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즉 현세의 삶 속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바로 잡고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활동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 평신도들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행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각자 받은 은사를 교회의 성직자들과 일치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본당안에서의 평신도

- 평신도들은 본당에 소속되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적 양식을 얻어 사도직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복음 전파에 헌신한다.
-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의 영신 생활을 도와주며 교회의 재산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그래서 본당은 사도직 활동의 훌륭한 표본이다.
- 평신도들은 소속 본당의 사제와 친밀히 결합하여 본당 안에서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 자신과 세상의 문제, 그리고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의견을 나누며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본당 사제의 사목 활동과 선교 활동을 힘대로 돕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본당 사목구의 여러 규정들과 사목 평의회

1) 교구 : 교구장이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며 단위 교회로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재하고 활동하는 곳이다.

2) 본당 사목구 : 교구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당 사목구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곳이므로, 신자는 반드시 본당 사목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는 거주지의 본당 사목구에 교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교적도 옮겨야 한다.

본당 사목구는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본당구역과 공소구역으로 구분된다. 본당구역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구역, 반)들로 나누인다.

5. 본당 사목구의 여러 규정들과 사목 평의회

- 3) **본당** : 성당은 경신례를 위하여 봉헌된 건물을 말하는데, 본당은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말한다.
- 4) **사목자의 임무** : 사목구 주임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 봉헌과 강론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목자는 성사를 합당하게 청하는 신자에게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
- 5) **관리** :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는 직원들은 교구의 규정에 따라 주임사제가 임면하고 본당 사목구 내의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은 교구 지침에 따른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의 재정 관리는 교구 지침에 따른다.
- 6) **문서** : 본당 사목구에는 세례대장, 견진대장, 혼인대장 및 문서, 사망대장, 교적, 금전출납부, 비품대장과 교구규정집이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적에는 신자들의 가족관계 및 세례대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신분 변동 사항(서품, 수도 종신서원, 입양, 혼인관계, 사망)이 기재되어야 한다.

5. 본당 사목구의 여러 규정들과 사목 평의회

- 7) **교회 운영 활동비** : 신자들을 주교회의와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8) **공익사업** : 사목자는 신자들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파견되었음을 명심하여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힘써야 한다.
- 9) **본당 신자 단체** :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자기 처지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불리었으므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신자는 각자의 연령, 성별, 신분, 조건에 따라 교회가 권장하는 신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신심단체들은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하는 단체이므로 공동체의 선익에 맞게 활동하고 결코 배타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5. 본당 사목구의 여러 규정들과 사목 평의회

- 10) **주임사제의 인준** : 신자들의 모임이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사목구의 공적 신자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은 사목구 주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출되더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활동과 재정은 주임사제의 지도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11) **청소년교육** : 부모들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들이 교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모와 사목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연령과 지적 수준에 맞는 교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사목구 주임사제는 교리교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
- 12) **사목평의회** : 각본당 사목구에는 사목평의회(약칭:사목회)를 구성하여,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도록 한다.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 사목평의회는 주임사제가 임명하는 본당 사목구 내의 성직자와 수도자 및 신심 깊고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 사목평의회 안에 각종 부서를 둘 수 있고 그 중에서 재무부서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